



Los Angeles Office
3435 Wilshire Blvd. Suite 1110
Los Angeles, CA 90010
Tel: (213) 385-4646
Fax: (213) 385-4040
Email: imin@iminusa.net

Irvine Office
8 Corporate Park, Suite 300
Irvine, CA 92606
Tel: (949) 551-4646
Fax: (949) 242-4522
Website: www.iminusa.net

"Gang of Eight" 이민 8 인방의 결정

지난 2012 년 추진된 행정유예안에서는 구제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 입법화된 개혁안에서는 불법체류시점과 거주시작시점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체류로 전환한 사람들이 구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(요즘 불법체류로 변경하겠다는 문의전화의 많이 오지만 아직까지 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선불리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.)

개혁입법안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 지 정확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미리 준비해 두실 서류들을 추려보았습니다.

1.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
2. 학교기록 등 미국에서의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
3.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
4. 세금보고서 (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)
5. 입국당시 사용한 여권 (현여권과 다르다면), 비자, I-94 (I-94 를 분실하셨으면 재발급 신청을 하십시오.)
6. 예전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한 분들은 그에 관한 모든 서류

601A 사면신청

현재 밀입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45(i) 조항외에는 없습니다. 아무리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도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한국으로 출국 후 미국으로의 재입국 여부가 불투명하여 많은 가족들이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.

2013 년 3 월 4 일부터 새로운 601A 사면조항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걱정도 줄게 되었습니다. 이제는 미국 내에서 사면을 받은 후 한국으로 출국하여 이민비자를 받아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I-130 가족이민 청원서의 승인 후 601A 사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601A 사면 요청시 가장 큰 관건은 "Extreme Hardship" (극심한 고통)을 증명하는 것입니다.

개개인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